

1. 일반시방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고시
-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라. 폐기물 관리지침
- 마.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
- 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 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처리지침
- 자. 사업자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지침등

2) 폐기물처리 적용기준

- 가. 노임단가 : 2008년 9월 1일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분)에 의거 산정
- 나. 환 율 : 2008년 11월 석유공사 발표 기준 1\$: 1,277.10원으로 산정
- 다. 처리단가 : 2008년 한국건설순환 자원협회 고시단가
- 라. 상기사항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술관리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공통사항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1)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정산서

나)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다)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라.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6)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가.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 용역비 지급방법은 계근전표에 의하여 정산처리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고자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아래표참조)로 파쇄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54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다.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변경승인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8) 보 상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처리기간

본 폐기물처리 기간은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본 폐기물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용 어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신축,증축,개축,재건축,재개발,도로신설,굴착,개보수,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말한다.

바.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페콘크리트, 페블록, 페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페콘크리트, 페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페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타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 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아.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자.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차.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 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바.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 가.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 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의 시켜야 한다.
- 가.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1)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2)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3)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4)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 다.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1)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2)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3)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4)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라.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3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바.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 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하여야 한다.
- 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아.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자.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차.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8)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 가.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 나.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1)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 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9) 수집·운반

- 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 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흰색)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 1)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2)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 및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 마.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능력을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 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재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 자. 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차.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소량 10㎡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함)

10) 중간·최종·종합처리

- 가. 도급자는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 3). 폐기물 처리대행 보증금의 적치
 - 2).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 나.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도급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도급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마. 도급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바. 도급자는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